

산업안전보건법

이번 호에 새롭게 신설된 「Q & A」란은 우리협회 교육부 문의 사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질의(Q)·회시(A) 형식으로 노동부와 우리협회 박필수 고문, 홍종민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연재합니다.

사업주의 정의

【관련조항】 법 제2조(정의)

발주자와 수급인의 사업주 여부

Q

- 설계와 시공을 수급자가 모두 담당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턴키계약)이 아닌,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공사노선과 공사방법의 조사와 결정, 설계, 주요 자재 및 장비의 결정, 사업시행 관련 인허가 및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일체를 발주자가 담당하고, 수급자는 단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정하여진 조건 안에서 세부적인 공사일정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0조에 있어서 사업주는 도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있어서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사업경영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그 대리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 건설업은 그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건설업

법 제5조) 일반건설업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데(건설법 제22조의 2)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하수급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A

- 발주자라 함은 건설법 제2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하므로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동법 및 그 하위 규칙상의 사업주는 수급인을 의미함
(건안 68307-221, '93. 12. 15)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며
- 상기 내용에 의하여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기 68301-1225, '93. 12. 15)

안전관리 체제

【관련조항】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인접한 소규모 두 공사장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Q

- 현재 시공중인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약 5~6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건설현장(50억 원 미만)이 개설되는 바 이때 안전기사는 각 현장마다 1인씩 배치해야 하는지?
소규모 인근 공사장이므로 1인의 안전기사를 두 현장에 배치해도 되는지?

A

- 현재 시공중인 건설현장의 인근에 새로이 발주된 건설현장이 개설되는 경우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라면 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산안 68307-104, '95. 3. 3)

공사금액이란 낙찰금액인지, 연차 발주공사금액인지

Q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관련사항으로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경우에는 전담안전관리자가 2인이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 당시의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과 연차별 발주공사금액이 있어

상기 공사금액의 적용은 당초 낙찰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A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3에 있는 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하는 것임

(산안 32169, '92. 6. 13)

설계, 구매, 시공 등을 일괄(TURN-KEY) 수주하는 경우 공사금액이란 어디까지 범위를 뜻하는 것인지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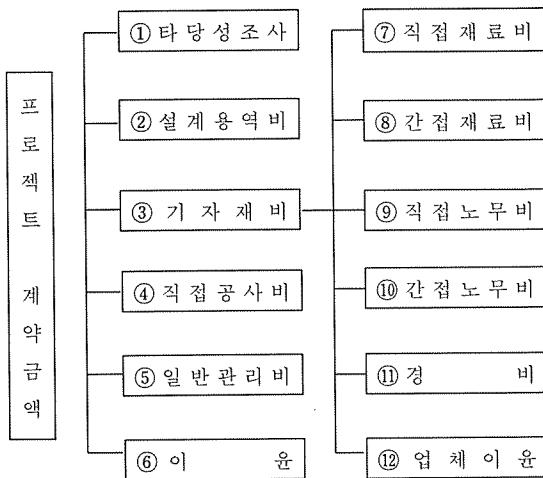
- 폐사는 설계, 구매, 공사 등을 일괄하여 수행 할 수 있는 종합기술 용역업체로서, 계약의 형태도 엔지니어링업의 특성상 공사시공뿐만 아니라, 설계기능을 포함하여 일괄(TURN-KEY) 수주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
- 상기와 같은 사유로 폐사와 같은 엔지니어링 업에서의 안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과 이해의 보다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 3에 명시된 건설업의 규모에 있어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업주와 체결한 프로젝트 계약금액 중 ④직접 공사비로 해석함은 적법한지

Q & A

폐사에서의 계약형태별 공사원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질의 2) 노동부고시 제91-39호, 제91-57호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6조(계상시기 등) 1항의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과 2항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상기 도해 중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만 가장 적법한지

A

○ 귀 질의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 3에 명시된 건설업 규모에 있어서 공사금액이라 함은 귀 질의서에 도시된 도표 중 ③ 기자재비, ④ 직접공사비, ⑤ 일반관리비, ⑥ 이윤을 합한 금액에서 ⑤ 일반관리비, ⑥ 이윤의 금액 중 ① 타당성 조사, ② 설계용역비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 즉 공사금액 = (③+④+⑤+⑥) - (⑤+⑥) 금액 중 ①, ②에 귀속되는 금액)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 2)에서의 총공사금액도 질의 1)에서의 공사금액과 같음

(산안 32169-441, '92. 8. 10)

공사금액이란 사업규모를 말하는지, 도급 공사금액을 말하는지

Q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서 총공사비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이 구분되는데 총공사비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 시행자가 관할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경우 결정되는 사업규모(a금액)와 시행자가 시공회사에 일괄도급시 도급공사금액(b금액)이 서로 상이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가?

A

○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비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식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 귀하가 질의한 경우의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규모(a금액)가 아닌 도급공사금액(b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산안 68307-135, '95. 3. 16)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인지, 차수별 계약금액인지

Q

-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로서

- ① 총공사 부기금액 ₩106,238,429,000원, 관급비가 ₩101,403,383,000원, 계 ₩207,640,812,000원이며(상시근로자 추정 불가), 공사기간: '92. 12. 30~'96. 12. 31
- ② 차수별 3차 계약금액 ₩12,266,419,000 원, 관급비가 ₩17,965,034,000원, 계 ₩30,231,453,000원이며(현재 투입근로자가 300인 이하임), 공사기간: '94. 2. 21 ~'94. 12. 31일로 계약되어 있는 현장으로서,
- 공사금액을 총공사 부기금액(₩207,640,812,000원)과 차수별 계약금액(3차 ₩30,231,453,000원)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A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임

(건안 68307-250, '94. 10. 10)

500억원이상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Q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중 500억원 이상이 될 때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A

- 500억원 이상시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지만 추가시는 별표 4의 각호의 유자격자로 선임하면 됨

(건안 68307-250, '94. 10. 10)

토목공사에 연계하여 설비, 전기공사 등을 별도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보건관계자 선임방법

Q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건설공사(토목공사: 터널 및 정거장 골조, 공사기간: 1990. 12~1995. 5)에 연계하여 정거장내,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공사기간: 1994. 7. 22~1995. 8. 31)를 추가 수주하였는 바,
- 별도의 계약건이라도 2개공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공사이고,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되는 공사이므로 기 선임된 토목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로 겸직코자 하는데 적법여부는?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을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들을 선임 토록 하고 법에 의한 직무를 부여한 궁극적인 목적은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본 공사중에 부대

Q & A

공사가 추가로 수주되어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 작업장에서 시공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추가수주액을 합한 총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 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건안 68307-278, '94. 10. 29)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Q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 가능 여부
 - * 현장대리인은 통상 현장소장이며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 가능 여부가 생점임
- 질의에 대한 의견
 - <갑설> 겸직 불가
 -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도 일정규모 이상(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선임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현장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자이므로 지휘 감독 체계상 각각 선임해야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을설〉 겸직 가능

-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요건에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없으며, 해당 업무의 전담 여부는 안전관리자에게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담 또는 겸임에 관한 제한이 없으며, 동 법령상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할 것임

A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을 지도·조언토록 하여 그 직무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를 규모에 따라 전담·겸임을 구분한 것은 전담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 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겸임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고유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 외에 여유력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서
-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겸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갑설이 타당함